

임금대장

사업장명 : _____ 임금 지급 대상 기간 : 20____년 ____월 ____일 지급일 : 20____년 ____월 ____일

성명	근로 일수	근로 시간	연장 시간	야간 시간	휴일 시간	기본급	제수당	공제계	실지급액

작성 기준: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

-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하며,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(같은 법 제42조).
-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과 감시·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일수·근로시간 수·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(시행령 제27조 제2항).
- 임금대장과 별개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(같은 법 제48조 제2항).